

# 안산시 일자리 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683
----------	------

제출년월일 : 2015. 8. 25

제출자 : 안산시장

## □ 개정이유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산 일자리센터의 운영 형태와 현실에 맞게 위탁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프로그램 운영 등 확대된 기능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 □ 주요내용

- 일자리센터의 명칭을 안산일자리센터로 함(안 제2조)
-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취업교육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일자리센터의 기능에 관한 규정(안 제4조)
- 일자리센터의 상담창구 및 교육 시설등에 관한규정(안 제5조)
  -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내에 취업상담 공간 확보 및 취업상담 가능
-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규정(안 제6조)
  - 수탁자의 선정, 방법 및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규정(안 제7조)
  - 수탁자는 직업상담사 자격증등을 갖춘 전문인력 배치
  - 수탁자의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무 및 시장의 지시사항 준수
- 위탁운영에 따른 수탁자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안 제8조)
- 위·수탁계약 위반할 경우 위탁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규정(안 제9조)
- 일자리센터의 다른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 입법예고결과 : 의견없음

## □ 전부개정 조례안 : 불임 1

## □ 관계법령발췌서 : 불임 2

-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 현행 조례

## □ 예산수반사항 : 불임 3 [비용추계서 참조]

## □ 기타 참고사항 : 불임 4

-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 추진계획 방침결정문

## 안산시 일자리 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를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안산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안산시 일자리센터의 명칭은 안산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안산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 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  
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
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6.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실직자·미취업자 등 수혜대상별 취업지원
7.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제5조(시설)** ① 시장은 센터에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 및 동주민센터 내에 직업 및 취업상담과 관련한 공간을 확보하여 취업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 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
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의무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8조(지도 · 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의무자의 의무와 위·수탁 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10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관련 기관, 단체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소관 실·과		일자리정책과
임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원
	담당·팀장 직위·성명	일자리센터담당 김원재
	담당자 성명·전화	김도형 (행정 2278)